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898
------	-----

2009. 07. 8.
재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09년 6월 15일

다. 상정일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16회 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2009년 6월 26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소위원회 구성

제1차 조례안심사소위원회(2009년 7월 8일) 심사

【서울특별시의회 제216회 정례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2009년 7월 8일) 의결(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공원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사업소를 공원별 관리방식에서 권역별 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자 사업소 명

칭을 변경하고 관할구역을 조정하며, 시민고객이 알기 쉽도록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명칭을 서울대공원으로 변경함(안 제87조, 제89조 및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 녹지사업소·공원관리사업소 ⇒ 푸른도시사업소

- 교통방송 기관장에 대한 대표성을 명확히 하여 대외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기관운영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기관장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03조 및 제104조)

- 교통방송 기관장의 명칭 : 본부장 ⇒ 대표

나.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의: 관련 실·국·본부와 각각 합의하였음
-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2009. 5. 29. ~ 6. 2.) 결과 : 별첨
 - (3) 규제심사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검토의견 (전문위원 임령)

현행 공원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공원별 관리방식에서 권역별 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자 사업소 명칭을 “녹지사업소(동작)”를 “동부 푸른도시사업소”로, “남산공원관리사업소(중구)”를 “중부푸른도시사업소”로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마포)”를 “서부푸른도시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명칭을 “서울대공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교통방송 기관장의 명칭을 “본부장”에서 “대표”로 변경하려는 것임.

- 「녹지사업소」(동작) ⇒ 「동부푸른도시사업소」(동작)
- 「남산공원관리사업소」(중구) ⇒ 「중부푸른도시사업소」(중구)
-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마포) ⇒ 「서부푸른도시사업소」(마포)

가. 녹지사업소·공원관리사업소를 푸른도시사업소로 변경하는 사항(안 제84~제87조, 안 제89조, 별표4)

- 현행 공원관리체계는 규모가 큰 공원을 중심으로 3개 사업소인 녹지사업소, 남산공원관리사업소,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신설예정인 “북서울의 꿈의 숲”(구. 드림랜드) 등 5개 공원(p.5, 표1 참고) 조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공원별 관리체계를 권역별 3개 사업소(중부·동부·서부)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푸른도시사업소로 명칭변경은 물론, 소관사무, 청사위치, 관할구역을 신설하려는 것임.

【참조】 공원관리체계 개선관련(권역별 3개 사업소 관리체계로 전환)

<표 1> 5개 공원 신규조성예정

공원명	규모(m ²)	위치	개장(예정)
북서울의 꿈의 숲 (구. 드림랜드)	662,627	강북구	2009.
신월문화공원	225,368	양천구	2009.
서울식물생태원	52,417	도봉구	2009.
중랑생태문화공원	147,336	중랑구	2010.
푸른수목원	100,243	구로구	2010.

<표 2> 사업소별 관할구역의 신설

명칭	위치	관할구역
동부푸른도시사업소 (녹지사업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로 219(신대방동 335)	성동, 광진, 강동, 서초, 강남, 송파, 동작, 관악
중부푸른도시사업소 (남산공원관리사업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길 117(회현동) 가산 1-2	종로, 중구, 용산, 도봉, 강북, 노원, 성북, 동대문, 종강
서부푸른도시사업소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난지도길 45-1(성산동 330-1)	마포, 영등포, 강서, 양천, 구로, 금천, 은평, 서대문

* ()는 현행

<그림 1> 권역별 관할구역(안)



- 현재 녹지사업소는 서울시 전체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사업추진을 총괄하고 있으며 과거 3급기관으로 운영되어오다가 2005.1.5 부터 4급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음.
- 현재 남산공원관리사업소와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는 4급기관으로서 그 지역에 국한된 공원관리만 하고 있음.
- 금번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
 - 권역별 3개 사업소 관리체계로 전환시 공원, 녹지 사업추진을 모두 총괄하는 녹지사업소의 업무분산으로 사업추진의 신속성 저하, 공원 사업 및 관리 일관성 결여, 예산낭비 등, 우려.
 - 권역별(지역별) 업무분장 어려움이 있음. 구리시 양묘장 5개는 신대 방동에 위치한 동부사업소, 난지(덕은), 가양 양묘장은 남산에 위치한 중부사업소에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권역별 업무분장이 안됨.
- 그리고 다음의 <표 3>에서와 같이 3개 권역의 공원의 개소 및 면적, 중부(7개소, 면적 3,919,252m²), 서부(5개소, 면적 3,353,843m²) 동부(5개소, 면적 1,995,848m²)의 공원 면적이 균등하지 않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권역별 관할구역이 일부 변경되는 등 충분하게 연구·검토된 사항으로 보기 어려움.

- 또한, 권역별 공원 관할구역을 보면, ‘동부’ 권역은 서울의 남부지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고, ‘중부’ 권역은 북부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권역별로 공원명칭을 사용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더욱이 ‘월드컵공원’, ‘남산공원’ 등의 공원명칭은 고유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고유명칭을 없애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2007.10.25 서울시와 서울시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서 제35조에 의하면 ‘서울시는 직제개편 등의 인력개편시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있으나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음.
- 위와같이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금번 개정조례안은 권역별 공원관리체계는 실제 권역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무국과 실무사업소, 노조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거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끝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녹지사업소와 관리형태의 남산과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의 인원을 축소하여 ‘북부(드림랜드)공원관리사업소(분소)’를 설치하여 근접거리에서 북부권을 관리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함.

[표 3] 사업소별 공원 개소 및 면적 현황

사업소명	공원명	위 치	면 적(㎡)	비 고
	전체합계	17개소	9,268,943	
중 부 푸른도시 사 업 소	소계	7개소	3,919,252	
	낙 산 공 원	종로구 동숭동 산2-1	103,077	구관리 49,306㎡제외
	남 산 공 원	용산구, 중구 일대	2,898,312	
	용 산 공 원	용산구 용산6가동 68-90	75,900	
	나 들 이 공 원	중랑구 망우동 산30-7	32,000	
	서울식물생태원	도봉구 도봉동 4	52,417	'09. 6.개장
	북 서 울 꿈 의 숲	강북구 번동 산28-6	662,627	'09.10.개장
	중 랑 생 태 공 원	중랑구 망우동 241-20	147,336	'10. 5.개장
서 부 푸른도시 사 업 소	소계	5개소	3,353,843	
	월 드 컵 공 원	마포구 상암동 478 일대	2,689,500	
	여 의 도 공 원	영등포구 여의도동 2	229,539	
	독 립 공 원	서대문구 현저동 101	109,193	
	신 월 문 화 공 원	양천구 신월동 산68-3	225,368	'09.10.개장
	푸 른 수 목 원	구로구 항동 10-1	100,243	'10.12.개장
동 부 푸른도시 사 업 소	소계	5개소	1,995,848	
	서 물 숲 공 원	성동구 성수동 685	1,156,498	
	길 동 생 태 원	강동구 길동 3	80,683	
	시 민 의 숲	서초구 양재동 236	258,991	
	릉 봉 공 원	목수동, 신당동, 한남동 일대	75,570	구관리 49,306㎡제외
	보 라 매 공 원	동작구 신대방동 395	424,106	

나.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명칭 변경 사항(안 제90조~ 안 제92조)

- 기존의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명칭은 대외적으로 시설관리를 주로 하는 기관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서울대공원”으로 공원 명칭¹⁾을 변경하고, “사업소장”을 “원장”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음.

1) 공원명칭과 관련하여 다른 시·도 사례를 보면, 대전광역시는 ‘한밭수목원’으로, 경상북도는 ‘자연학습원’ 등으로 공원명칭을 사업소 명칭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음.

- 그러나 기존 “서울대공원”이라는 공원 명칭이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사용되어 보편화되어 있다고는 하나, 행정기관에서 명칭을 일방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뛰어난 명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명칭공모를 실시하는 등, 토론회 등의 절차를 거쳐 명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 교통방송 기관장 명칭변경 사항(안 제103조, 안 제104조)

-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의 교통방송본부장의 명칭이 대외기관 및 단체 등과 방송업무 제휴시 대표성이 없는 소속 부서장 등으로 이해하여 대외활동에 제약이 있어 기관장의 명칭을 “본부장”에서 “대표”로 변경하려는 것임.
- 그러나 교통방송은 서울특별시 직위표상에 도시교통본부의 하부기관이며,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기관)에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타 기관 등과 비교할 때 다소 과장(過狀)된 명칭으로 볼 수 있고, 15개 시·도 전국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에서도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이 없으므로, 명칭변경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사업소를 공원별 관리방식에서 권역별 관리방식으로 전환해서 3개 권역별로 정하자는 것인데 이를 4개 권역으로 바꾸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 답변 : 관할구역을 4개 사업소로 할 경우 즉, 1개 사업소가 더 만들어 지면 이에 따른 지원조직이 또 필요하게 되어 인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가능한 정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인력을 배분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 교통방송 기관장의 명칭을 '대표'로 사용하는 것은 적정성과 타당성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 답변 : 교통방송 기관장에 대한 대표성을 명확히 하여 대외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5. 토론요지

-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한 개정안이므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 조례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도록 함(위원장).
 - 조례안심사소위원회(5명) : 위원장(김영천 위원), 위원(송주범 · 신기

철 · 이한기 · 정준희 위원)

- 활동기간 : 2009.6.29 ~ 2009.7.10 까지로 함.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조례안심사소위원장 김 영 천 위원)

- 의안번호 제898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위원회 활동 결과,
- 먼저,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하기보다는, 명확한 이해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내용별로 심사 를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음.
- 교통방송 기관장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기관 명칭의 적정성과 타당 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기관장의 명칭을 "본부장에서 대 표"로 하려는 사항은 명칭 변경 없이 "본부장"이란 명칭을 그대로 사용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원안대로 함.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교통방송 기관장의 명칭을 본부장에서 대표로 변경하려는 사항은 기관 명칭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변경하지 않고 "본부장"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도록 하려는 것임.

나. 수정내용

- "본부장"을 "대표"로 변경하는 사항을 삭제함.(안 제103조, 안 제104조)

9.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일자 : 2009년 7월 8일

발 의 자 : 재정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교통방송 기관장의 명칭을 본부장에서 대표로 변경하려는 사항은 기관 명칭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변경하지 않고 "본부장"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도록 하려는 것임.

2. 수정 주요골자

가. "본부장"을 "대표"로 변경하는 사항을 삭제함.(안 제103, 안 제104 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3조와 안 제10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안 제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u>제12절 서울특별시녹지사업소</u>	<삭 제>	(개정안과 같음)
<u>제84조(설치) ① 범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종 공사의 시행과 녹화자원의 생산·공급 등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여 서울특별시녹지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u> <u>②사업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로 219(신대방동 395번지)에 둔다.</u>	<삭 제>	(개정안과 같음)
<u>제85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합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u>	<삭 제>	(개정안과 같음)
<u>제86조(소관사무) ①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u> <u>1. 공원조성공사의 시공·감독</u> <u>2. 공원관리사무소의 운영</u> <u>3. 녹지대·수경시설의 시공·관리</u> <u>4. 가로수 식재의 시공·관리</u> <u>5. 각종 묘목·꽃묘·잔디의 생산·공</u>	<삭 제>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급</p> <p><u>6. 수목의 병충해방제 및 공해오염에 대한 조사연구</u></p> <p><u>7. 조경에 대한 기술지도</u></p> <p><u>8. 그 밖의 공원·녹지관련 업무</u></p>		
<p><u>제13절 서울특별시공원관리사업소</u></p>	<p><u>제13절</u></p> <p><u>서울특별시푸른도시</u></p> <p><u>사업소</u></p>	<p><u>제13절</u></p> <p><u>서울특별시푸른도시</u></p> <p><u>사업소</u></p>
<p><u>제87조(설치) ①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공원관리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u></p> <p><u>②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다.</u></p>	<p><u>제87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및 도시녹화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공사의 시행과 녹화자원의 생산·공급 등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푸른도시 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u></p> <p><u>② 사업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u></p>	<p><u>제87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및 도시녹화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공사의 시행과 녹화자원의 생산·공급 등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푸른도시 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u></p> <p><u>② 사업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u></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90조(설치)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여가선용 및 보건향상을 위한 휴식처인 서울대공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90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해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이하 이 절에서 "서울대공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90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해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이하 이 절에서 "서울대공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사업소는 경기도 과천시 광명길 42(막계동 159번지 1호)에 둔다.	② 서울대공원은 --- ----- -----, -----,	② 서울대공원은 --- ----- -----, -----,
제91조(<u>소장</u>)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1조(<u>원장</u>) 서울대공원에 원장---, 원장----- -----, -----, -----,	제91조(<u>원장</u>) 서울대공원에 원장---, 원장----- -----, -----, -----,
제9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 8. (생략)	제92조(소관사무) 원장----- -----, 1. ~ 8. (현행과 같음)	제92조(소관사무) 원장----- -----, 1. ~ 8.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3조(본부장) 교통방송에 <u>본부장</u> 을 두고, <u>본부장은</u>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3조(대표) ----- 대표를 ---, 대표는 -----	<삭 제>
제104조(소관사무) <u>본부장은</u>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 5. (생략)	제104조(소관사무) 대표는 ----- -----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부 칙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삭 제>
제14조 중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장” 을 “서울특별시교통방송대표”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장” 을 “서울특별시교통방송대표”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울특별시남산공원관리사업소”를 “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① 서울특별시중부푸른도시사업소”로, “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을 “중부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울특별시남산공원관리사업소”를 “서울특별시중부푸른도시사업소”로, “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을 “중부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울특별시남산공원관리사업소”를 “서울특별시중부푸른도시사업소”로, “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을 “중부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수임기관란 중 “구청장 및 녹지·남산·월드컵공원·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을 각각 “구청장, 동부·중부·서부푸른도시사업소장 및 서울대공원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관리청란 중 “녹지사업소장”을 “중부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수임기관란 중 “구청장 및 녹지·남산·월드컵공원·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을 각각 “구청장, 동부·중부·서부푸른도시사업소장 및 서울대공원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수임기관란 중 “구청장 및 녹지·남산·월드컵공원·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을 각각 “구청장, 동부·중부·서부푸른도시사업소장 및 서울대공원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수임기관란 중 “구청장 및 녹지·남산·월드컵공원·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을 각각 “구청장, 동부·중부·서부푸른도시사업소장 및 서울대공원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1 관리청란 중 “녹 지사업소장”을 “중부 푸른도시사업소장”으 로 한다.	별표 1 관리청란 중 “녹 지사업소장”을 “중부 푸른도시사업소장”으 로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절(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3절의 제목 “서울특별시공원관리사업소”를 “서울특별시푸른도시 사업소”로 한다.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및 도시녹화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공사의 시행과 녹화자원의 생산·공급 등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푸른도시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사업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장은”을 “소장은 관할구역 내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원조성공사의 시공·감독
6. 공원관리사무소의 운영

7. 녹지대·수경시설의 시공·관리
8. 가로수 식재의 시공·관리
9. 각종 묘목·꽃묘·잔디의 생산·공급
10. 수목의 병충해방제 및 공해오염에 대한 조사연구
11. 조경에 대한 기술지도
12. 그 밖의 공원·녹지관련 업무

제14절의 제목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를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으로 한다.

제9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소는”을 “서울대공원은”으로 한다.

-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해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이하 이 절에서 “서울대공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91조의 제목 “(소장)”을 “(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사업소에 소장”을 “서울대공원에 원장”으로, “소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장”을 “원장”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울특별시남산공원관리사업소”를 “서울특별시중부푸른도시사업소”로, “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을 “중부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수임기관란 중 “구청장 및 녹지·남산·월드컵공원·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을 각각 “구청장, 동부·중부·서부푸른도시사업소장 및 서울대공원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관리청란 중 “녹지사업소장”을 “중부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한다.

[별표 4]

푸른도시사업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87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서울특별시중부푸른도시사업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길 117(화현동·가산 1-2)	종로, 중구, 용산, 도봉, 강북, 노원, 성북, 동대문, 중랑
서울특별시서부푸른도시사업소	서울특별시 미포구 난지도길 45-1(성산동 30-1)	마포, 영등포, 강서, 양천, 구로, 금천, 은평, 서대문
서울특별시동부푸른도시사업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로 219(신대방동 335)	성동, 광진, 강동, 서초, 강남, 송파, 동작, 관악